

# 산업재산권 진단지원제도 시행에 부쳐

## I. 서언



이 집 종  
본회 이사

지금 세계각국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속에서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과 개발된 기술을 산업재산권화 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WTO출범등으로 이러한 선진국등의 특허공세는 더욱 치열해져 가는 추세로 산업재산권관리체계가 미흡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및 수출등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20만 건으로 세계 상위권의 출원대국이라 하지만 대부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 특허비중이 낮고 해외출원이 미비하여 외국과의 산업재산권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내기업중 특허전담부서를 가진 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1%로도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등 사전진단활동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의 방향설정과 기술도입 협상력제고 및 필요기술만의 전략적 도입을 위한 필수적요소임에도 불구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전 선행기술조사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함에 따른 중복투자 및 연구개발결과의 무용지물사례는 물론 낡은 기술 또는 중복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이에대한 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는 '95년도에 통상산업부로부터 총괄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우리 진흥회가 지원대상 적격업체

## 목 차

- I. 서언
- II. 산업재산권진단제도란?
- III. 추진목표는?
- IV. 운영체계는?
- V. 진단수행내용은?
- VI. 산업재산권 진단수행 및 지원절차는?
- VII.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규모는?
- VIII. 향후 발전계획은?
- IX. 진단기관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 X. 평진단기관의 자격요건 및 진단과제 선정기준은?
- XI. 기대효과는?
- XII. 앞으로 추진일정은?

〈이번호에 전재〉

의 선정기준 및 세부사업운용요령등을 마련 통상 산업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으며 '97년도 부터는 특허청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게 되었다.

## II.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란?

특허청의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특허청 고시 제 97-2호)에 의거 추진되는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계 구축사업으로써 자체적으로 생산기술 및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등이 연구개발착수 또는 기술도입추진 이전에 특허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등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동향, 연구개발추진방향 및 분쟁발생 대응책 수립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단비용을 정부

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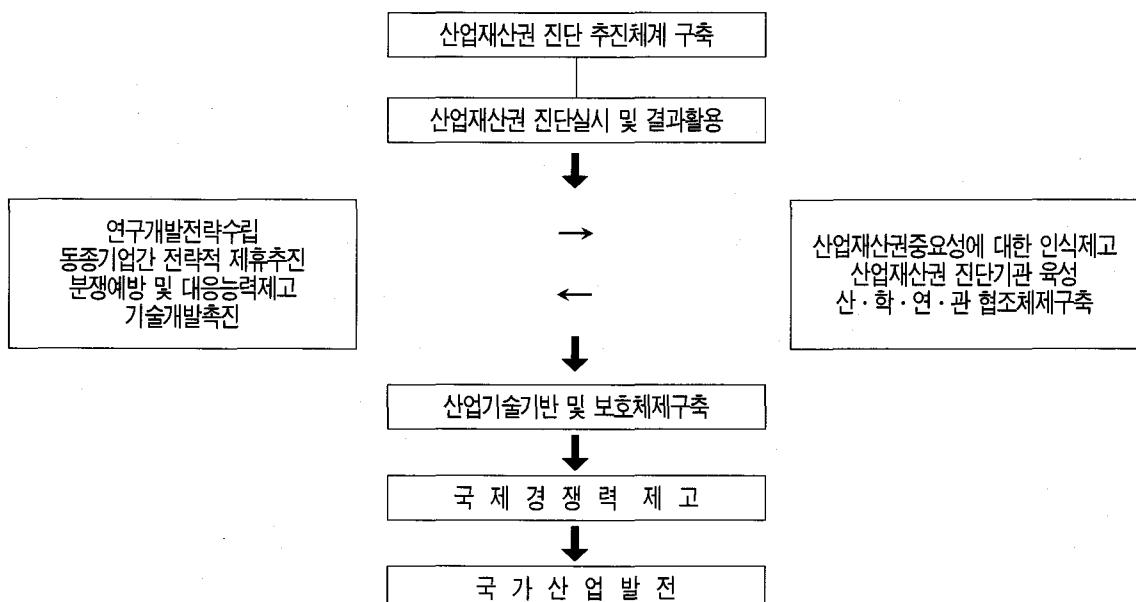
## III. 추진목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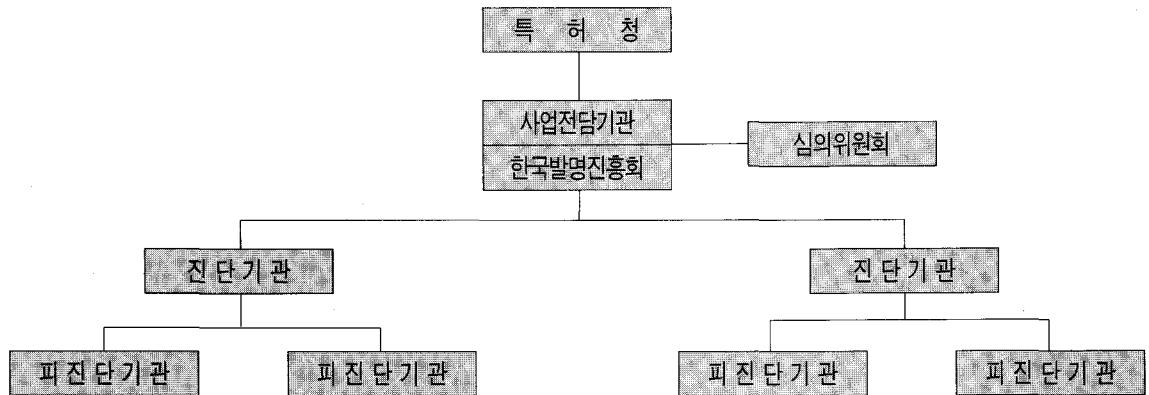
산업재산권 진단제도시행을 통한 종합적인 산업재산권 지원기관 육성 및 산·학·연·관 협조체계구축과 연구개발방향제시 및 기술도입의 전략적 추진등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제휴 촉진 및 특허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나아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 IV. 운영체계는?

### ■ 사업전담기관

진단사업의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심의위원





회 운영, 진단사업수행에 대한 진단비용 지원 및  
지도감독등 총괄수행

#### ■ 심의위원회

진단기관·피진단기관 및 진단과제 심의·선정,  
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 ■ 진단기관

사업전담기관과 피진단기관(업체)으로부터 진단  
자금을 지원받아 피진단기관(업체)이 진단을 요구  
하는 품목, 기술에 대한 산업체재산권 진단을 수행

#### ■ 피진단기관

진단사업비를 일부 부담하여 진단결과를 활용하  
고자 하는 업종별 단체 또는 조합, 대학, 국·공립  
및 비영리 연구법인 연구개발투자금액이 매출액대  
비 일정비율이상인 중소·중견기업등

## V. 진단수행내용은?

#### ■ 선행기술조사

연구개발 착수, 기술도입추진 이전에 자체구축

된 DB 또는 대민 특허정보서비스 기관의 특허  
DB를 이용하여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 기술정보수집

#### ■ 특허기술분석도(Patent Map)작성

수집된 특허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atent Map작성

#### ■ 진단 및 분석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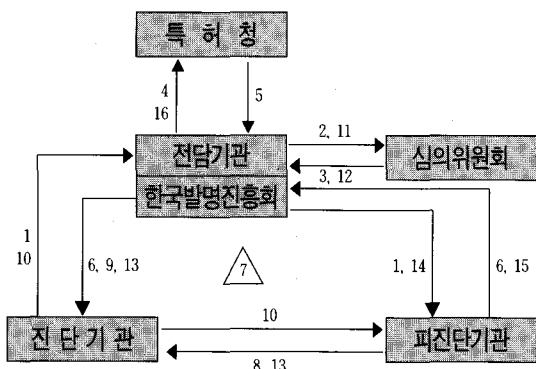
조사된 특허기술정보와 Patent Map을 활용하  
여 핵심기술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  
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추진  
방향 제시 및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클레임에 대  
한 사전대응책 수립등 진단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 ■ 특허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지원활동

R&D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허기술정보의 활용  
을 촉진하는 교육·홍보프로그램 마련 및 산업체재산  
권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등

#### ■ 진단결과의 보급확대강구 및 특허관리 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 VI. 산업재산권 진단수행 및 지원절차는?



## VII.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규모는?

- 진단사업에 따른 소요재원은 발명장려를 위한 정부보조금 및 신청피진단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고, 전당 진단비용은 15백만원이하의 선에서 인정하고 이중 50%를 정부의 진단보조금으로 지원(단,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50%초과지원가능)
- 당해년도는 이 제도가 특허청 사업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초기사업으로 30여 기술과제를 선정, 진단을 수행케 하고 점차 확대·발전시켜나갈 계획임

## VIII. 향후 발전계획은?

산업재산권보호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 제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을 감안 가능한 많은 중소·중견기업등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1 진단기관지정신청, 피진단기관 및 진단과제 선정신청
- 2 신청진단기관 및 피진단기관·진단과제 심의인건 상정
- 3 신청진단기관 및 피진단기관·진단과제 심의·선정
- 4 5 진단기관 지정 승인요청 및 승인
- 6 진단기관 지정 및 피진단기관·진단과제 선정결과 통보
- 7 전담기관, 진단기관 및 피진단기관간 협약체결
- 8 9 진단과제에 대한 진단의뢰 및 진단비용 일부지원
- 10 진단결과 제공 및 전담기관에 보고
- 11 12 진단결과 평가를 위한 안건상정 및 평가
- 13 진단결과 보고서 평가결과 통보 및 진단비용 정산
- 14 15 진단결과 활용보고 및 지도등 사후관리
- 16 진단사업 종합결과보고

### 기본구축단계 '97년

-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관리 지침 마련 등 추진체계구축
- 진단기관 확대지정
- 교육 및 홍보활동 중점전개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동취약기술분야 및 분쟁발생예상 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진담함.(당해 산업재산권 진단목표건수: 30여건)

### 발전 단계 '98년~'99년

- 초기년도 사업추진 성과분석을 통한 보완 및 재정비
- 진단기관 확대지정 및 요건강화
- 인식저변확산 및 세미나, 기술개발성공사례발표회 등 정례회를 통한 산업재산권관리 활성화유도
- 산업재산권 연수지도 및 컨설팅 사업과 연계추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진단사업분야를 전산업분야로 확대 발전 및 첨단기술분야에 중점지원
- 진단지원과제건수를 점차 확대시켜 나아감

### 성숙단계 2000년 이후

- 종합적인 산업재산권 지원기관 육성 및 산·학·연·관 협조체계구축
- 기술개발육성사업으로서의 정착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및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마련

## IX. 진단기관의 자격요건 및 선정 절차는?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기타 특허법률사무소등 특허관련업무의 수행기관으로 진단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진단실시 가능분야를 설정, 사업안내에서 지정하는 기간까지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지정(신청·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담기관에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관련 제규정 및 별도로 정한 심의기준표에 의거 당해기관의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기술분야별 전문인력보유현황 및 연구시설, 진단기능분야 및 진단능력등에 관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친 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 X. 피진단기관의 자격요건 및 진단

### 과제 선정기준은?

- 진단사업비를 일부 부담하여 진단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종별단체 또는 조합, R&D 과제를 수행중인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매출액대비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및 부설연구소 등으로 사업안내에서 지정하는 기간까지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산업재산권 피진단기관 및 진단과제 선정신청서를 작성, 전담기관에 제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기관(기업) 및 진단과제에 대하여는 관련 제규정 및 별도로 정한 심의기준표에 의거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산업 기술부문 및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목표, 진단과제의 적정성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도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피진단기관 및 진단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 : 총자산 200,000백만원 미만, 매출액 100,000백만원미만, 상시근로자 3,000인 미만으로써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하며 필요충분조건은 아님

## XI. 기대효과는?

■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이 기대할 수 있겠다.

-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정확한 산업재산권 소유현황파악지원으로 기술개발전략수립의 용

- 이, 중복투자방지 및 기술료절감 등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기술개발촉진유도
- 크로스라이센스, 특허공유 및 공동개발등의 유도를 통한 관련기업간 전략적제휴촉진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사전 산업재산권 분쟁예방 및 분쟁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능력 구비
  - 산업재산권 관련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기관 육성
  -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확산 및 산·학·연·관 협조체계 구축
  - 산업재산권 획득 및 실시촉진등 기술개발촉진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 또한 우리 진흥회는 앞으로 이 지원제도의 이

용을 통한 개발기술이 권리화(출원)된 경우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등 각종 지원행사 및 포상등 지원제도이용 신청시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실시알선 신청시 우선조치 및 기술개발(직무발명) 성공사례 발표회 사례 발표등 제반지원활동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XII. 앞으로 추진일정은?

우선 이달(3월)부터 신청에 의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확대 지정과 지원대상 진단과제 선정을 통해 5월부터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이용확대를 위해 펴진단기관·과제 선정은 2차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추진계획일정은 다음과 같다.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고
- 사업안내 및 홍보	연 중	주요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게재
- 진단기관신청접수 및 지정 • 1차 • 2차	'97. 3. 13 ~ 4. 7 미 정	(26일간)
- 펴진단기관·진단과제 신청 접수 및 선정 • 1차 • 2차	'97. 3. 13 ~ 4. 16 '97. 6. 1 ~ 6. 30	(35일간) (30일간)
- 진단실시 • 1차 • 2차	'97. 5. 1 ~ 7. 31 '97. 7. 15 ~ 10. 14	(3개월간) (3개월간)
- 심의위원회 개최	'97. 4 ~ '97. 10	5~6회
- 종합평가 및 익년도 사업 계획 수립	'97. 10 ~ '97. 11	
- 사후관리 및 지도	연 중	지속

\* 문의처 : 본회 기획조사부 [ 557-1077/8 (교환 213) ]

발록9703